

[기윤실 긴급토론회]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어떻게 보고 무엇을 할 것인가?

- 주최 :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가치운동본부
- 일시 : 2019년 4월 15일(월) 오후 7시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 사회 : 목광수(서울시립대 철학과 교수, 기윤실 바른가치운동 본부장)
- 발제 : 정종욱(변호사, 기독교법률가회 연구위원장)
- 토론 : 김현철(전 낙태반대운동연합 회장), 달밤(믿는페미 활동가), 문시영(남서울대 교양대학 교수), 백소영(강남대 기독교학과 교수), 홍순철(고대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

순서

- 낙태죄 헌법재판소 판결문 분석 / 2쪽
- 토론회 녹취록 / 12쪽



I. 낙태죄 헌법재판소 판결문 분석

정종욱(변호사, 기독교법률가회 연구위원장)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0.0.00. 산부인과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2010. 00.0.경부터 2010.0.0.경까지 69회에 걸쳐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업무상승낙낙태) 등으로 기소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6고단3266). 청구인은 제1심 재판 계속 중, 주위적으로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고, 예비적으로 위 조항들의 낙태 객체를 임신 3개월 이내의 태아까지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7. 1. 25.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6초기1322). 이에 청구인은 2017. 2. 8. 위 조항들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주 문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심판대상 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 조항]

모자보건법(2009. 1. 7. 법률 제933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8조(‘형법’의 적용 배제) 이 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한 자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항 및 제27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모자보건법 시행령(2009. 7. 7. 대통령령 제21618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 참고: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 헌법불합치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위헌법률심판의 일종이다. 위헌법률심판은 특정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는지를 판단하는 심사를 말한다. 위헌법률심판에는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와 관련해 헌법불합치 외에도 합헌, 한정위헌, 일부위헌, 입법촉구 등의 형태가 있다. 그 중에서 심판대상이 된 법률이 위헌이라도, 일시적으로 해당 법을 유지하는 결정을 헌법불합치라고 한다. 해당 법률을 즉각적으로 무효로 하는 위헌결정과 달리, 법적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이다.

1. 합헌의견과 위헌의견의 핵심 논거

위헌	합헌
1. 여성의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침해	1. 태아의 생명권 존중
2. 국가의 여성의 권리 보호 의무 위반 (보호 되는 공익에 비해 여성의 권리침해가 훨씬 큼)	2.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공익 보호의 필요성 중대하므로 어느 정도의 권리 제한이 정당화 됨)
3. 세계적으로 낙태죄가 폐지 추세에 있음 ¹⁾	3. 생명보호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임
4.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낙태를 찬성하고 있음 ²⁾³⁾	4. 합헌 판결이 내려진지 7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짧은 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 없음
5. 낙태죄 관련 법률조항이 사실상 사문화(死文化) 되었음	5. 생명보호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여전히 법률 조항의 존재 가치가 있음
6. 낙태를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한 형벌권 행사임	6. 생명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을 고려해보았을 때, 낙태를 처벌하는 것은 적절한 형벌권 행사임
7. 여성만을 처벌하는 것은 분명한 차별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됨	7. 낙태를 교사, 방조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으므로 차별이 아님

2. 위헌 의견의 주장

(1) 여성은 임신을 하게 되면 약 10개월의 기간 동안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겪게 되며, 출산 과정에서는 극도의 고통과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여성에

- 1)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1960년대에 낙태를 합법화 했고, 미국도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사건 판결 이후 임신 기간을 3단계로 나눠 1,2단계의 낙태를 원칙적으로 합법화 함. 최근에 카톨릭 국가인 아일랜드도 낙태죄를 폐지하였음.
- 2) 한국갤럽이 지난 29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필요할 경우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77%(남성 79%, 여성 75%)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와 30대는 각각 85%, 94%의 비율로 '필요시 낙태 허용'에 찬성했다(2019. 3. 31. 자 경향신문 사설)
- 3) 8년 만의 정부 차원 실태조사는 2017년 말 청와대 게시판의 '낙태죄 폐지' 청원 서명자가 23만명에 달하며 조국 민정수석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밝힌 데 따라 이뤄진 것이다. 만 15~44살 임신이 가능한 여성 1만여명이 온라인에서 답한 결과를 보면, 임신 경험자의 20% 가까이가 인공임신중절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학업·직장 등 사회활동 지장 △경제 형편의 어려움 △원하지 않거나 터울 조정 등 자녀계획을 대표적 임신중절 이유로 꼽았는데 이는 현행법상 모두 '불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연간 임신중절수술은 5만건으로 추산돼 이전 조사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지만, 낙태가 '범죄'인 현실에서 실제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서 추산하는 규모는 그 몇배에 달한다. 온라인에는 음성적인 임신중절 약품 거래도 넘쳐난다. 무엇보다 여성계에선 이번 조사의 문항들이 '저출산' 해결 프레임 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도 응답자의 75% 넘는 이가 낙태죄 조항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9. 2. 15. 한겨레 신문 사설)

게 있어서 자녀의 양육은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끊임없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노력을 요구하고, 여성이 처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과 직장 등 사회생활에서의 어려움, 학업 계속의 곤란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여전히 가부장적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은 임신, 출산으로 인해 많은 불이익을 겪고 있다. **임신, 출산, 육아는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여성이 임신을 유지하여 출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결정 하는 것은 자신의 생활영역에서 자율적으로 형성에 나가는 것에 관한 것으로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해당한다.**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 상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권리인데,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간이 자신의 생활영역에서 인격의 발현과 삶의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여성의 경우 남성과 달리 임신, 출산을 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한 결정은 여성의 삶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태아의 발달 단계 혹은 독자적 생존능력과 무관하게 임신 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함으로써, 형법적 제재 및 이에 따른 형벌의 위하력(威嚇力)으로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 출산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

(2) 국가에게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은 맞지만, 동일한 생명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의 발전과정을 일정한 단계로 구분하고 그 각 단계에 상이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인간 생명의 발달 단계에 따라 그 보호 정도나 보호 수단을 달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산부인과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이견 있음) **“임신 22주”**를 기준으로 태아의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헌법불합치 의견은 22주로, 단순 위헌 의견은 14주로 보고 있음).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할 때 훨씬 인간에 근접한 상태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결정 가능 기간**)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낙태죄와 관련된 논쟁에서 현재까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대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대립적인 구도에서 문제를 보아왔다. 그런데, 임신한 여성과 태아 사이의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그 대립 관계는 단순하지 않다. 태아는 엄연히 모와는 별개의 생명체이지만, 모의 신체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특별한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생명의 유지와 성장을 전적으로 모에게 의존하고 있다. 임신한 여성과 태아는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의존적인 매우 독특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은 낙태갈등 상황에서조차 종종 발견된다. 일정한 경우 임신한 여성들은 자신이 처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임신, 출산, 육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이고, 만약 자녀가 출생하면 어머니가 될 자신뿐만 아니라 태어날 자녀마저도 불행해질 것이라는 판단하에 낙태를 결심하고 실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가해자 대 피해자'의 관계로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관계를 고정시켜서는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현재 국가는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사회적, 제도적 개선을 하는 등의 적극적 노력을 충분히 하지 못하면서 임신한 여성을 처벌하여 낙태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낙태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법익을 희생시키는 현재 국가가 취하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국가는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따라 양 기본권의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해법을 마땅히 모색해야만 하는 것이다.⁴⁾

(3) 낙태죄 조항이 실효성 있는 형벌 조항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2011년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낙태 여부를 고민할 때 고려하는 사항이나 실제로 출산을 선택하게 되는 요인에서 낙태가 불법이라는 점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2011년에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연간 약 17만 건의 낙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여성이 낙태 범죄로 기소된 경우는 연간 10건 이하에 불과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보면 자기낙태죄 조항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거의 적용되지 않는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된 조항**인 것이다.

낙태갈등 상황에서 형벌의 위하가 임신한 여성의 임신종결 여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사정과 실제로 형사처벌되는 사례도 매우 드물다는 현실은 자기낙태죄 조항이 낙태갈등 상황에서 태아의 생명보호를 실효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4) 헌법재판소는 올봄 7년 만에 낙태죄 위헌 여부 판단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낙태죄를 둘러싼 논란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의 대립 구도를 벗어나지 못했다. 남성들에겐 어떤 책임도 묻지 않은 채 형법 269조와 270조가 낙태한 여성과 의료진만 처벌하는 상황에서, 낙태 여성에 대해 '책임감 없거나 이기적 존재'라는 낙인찍기 또한 이어져 왔다. 낙태죄 조항은 여성의 재생산권을 국가가 통제하려는 발상으로, 여성의 건강권뿐 아니라 인권 침해라는 점을 이제는 온 사회가 인식할 때다. 전통적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도 낙태죄 조항을 폐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여성과 태아의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 새로운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활발하다.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 등 입법적 노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2019. 2. 15. 한겨레 신문 사설)

(4) 이처럼 낙태의 문제를 형벌로 규제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형벌의 위협으로 인해 낙태갈등 상황에 처한 여성이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낙태를 실행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모자보건법에 정한 지극히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해 처벌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낙태에 관한 적절한 상담이나 교육이 불가능하고, 낙태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해 음성적인 낙태 시술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적인 낙태 수술을 원하는 여성들은 비싼 수술비를 감당해야 하는데,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미성년자나 저소득층은 시기를 놓쳐 낙태를 하지 못하고 출산 후에 영아살해로 이루어지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기도 한다.

또한 자기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본래의 목적과 무관하게 상대 남성들의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자신으로 임신한 여성이 병원에서 낙태를 한 후 자신을 만나지 않으려 할 때 상대 남성이 자기낙태죄로 고소하겠다는 위협을 하는 경우, 배우자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위자료청구나 재산분할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낙태에 대해 고소를 하는 경우 등이 그러하다.

(5) 모자보건법은 5가지 사유에 대해서 낙태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으나, 이는 형법 제22조의 긴급피난이나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우 한정적인 사유들이다. 위 사유들에는 '임신 유지 및 출산을 힘들게 하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갈등 상황'이 전혀 포섭되지 않는다. 모자보건법이 정한 사유들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이 처해 있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대하여 형법적 제재의 예외를 전혀 인정하고 있음으로 인해, 임신한 여성은 임신 유지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부담, 출산과정에 수반되는 신체적 고통, 위험을 감내하도록 강제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위 사유들로 말미암아 임신, 출산, 육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직장 등 사회생활에서의 어려움, 학업 계속의 곤란, 경력단절 등을 포함한 각종 고통까지 겪을 것을 강제당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6) 입법자는 자기낙태죄 조항을 형성 함에 있어 태아의 생명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실제적 조화와 균형을 이루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아니하여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하여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공익과 사익간의 적절한 균형관계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자기낙태죄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3. 합헌 의견의 주장

"지금 우리가 자기낙태죄 조항에 대한 위헌 합헌의 논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모두 모체로부터 낙태당하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태아였다."

"나는 인간의 생명을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하겠노라. 비록 어떤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사용하지 않겠노라."(히포크라테스 선서에 기반한 제네바 선언 중에서도)

(1) 인간은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하며, 이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당위적 요청이다.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고유한 가치를 지니며,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다.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 즉, **생명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에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태아는 인간으로서 형성되는 가는 단계의 생명으로서 인간의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태아가 모체에서 점점 성장하여 인간의 모습에 가까워진 후 출산을 통하여 인간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태아와 출생한 사람은 생명의 연속적인 발달과정 아래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성의 정도나 생명 보호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태아와 출생한 사람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출생 전의 생성 중인 생명을 헌법상 생명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생명권의 보호는 불완전한 것에 그치고 말 것이므로 태아 역시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 태아의 발달과정에 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생명권의 보호를 가장 두텁게 하는 해석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태아는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된 때로부터 출생시까지 기간의 구분 없이 생명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향유한다.**

(2) 태아의 생명을 소멸시키는 낙태의 자유가 자기결정권을 통해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우리 헌법상 낙태할 권리는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고, 헌법제정권력인 국민이 그와 같은 권리를 부여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낙태는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에 어긋나는 생명침해행위이다. **태아가 모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임신한 여성에게는 생명의 내재적 가치를 소멸시킬 권리, 즉 태아를 적극적으로 죽일 권리가 자기결정권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그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생명과 안전,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고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그러하다. 태아의 경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생성 중인 생명으로서 외부 공격에 취약하다.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낙태를 금지할 수 있는 것이다.**

(3)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해 입법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다.** 형벌의 부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수단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수단을 채택하여 낙태를 동일한 정도로 방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성교육 내지 피임 관련 교육의 강화, 낙태 관련 상담의 실시,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모성보호조치 등의 방법 역시 낙태를 방지할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 외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덜 침해하면서 태아의 생명을 동등하게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다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다.

(4) 다수의견은 추정 낙태시술 건수에 비해 수사기관의 기소 건수가 매우 적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자기낙태죄 조항이 형벌로서의 실효성이 없어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형벌은 그 위하력으로 인하여 존재 자체만으로 해당 행위를 어느 정도 억지하는 효과가 있다.** 낙태는 임신한 여성과 시술 의사가 모두 처벌되기 때문에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 적발이 쉽지 않으므로, 기소 건수가 적다는 것이 곧바로 낙태죄가 실효성이 없다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수의견은 형벌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거나, 상대방에 의해 협박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러나 이는 그러한 악용 자체를 막기 위한 대책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이지, 악용 사례가 있다고 하여 자기낙태죄 조항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자기낙태죄 조항에 의하여 단 하나의 태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자기낙태죄 조항의 존재의의는 충분한 것이다.**

자기낙태죄 조항을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통한 인간의 존엄을 근본으로 하는 헌법적 가치질서의 수호에 있다. 태아는 인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국가는 이를 보호해야 하는 정당한 공익이 있다. 태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는 입

법, 행정, 사법의 모든 국가기관에 있으며, 국가기관은 태아를 보호하고 출생하도록 법질서를 형성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이므로, 헌법재판소도 자기낙태죄 조항을 통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결단을 함부로 배척할 것이 아니다.

(5) 생명의 발달과정은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으로서 특정 시점을 전후로 하여 명확하게 발달단계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임신 12주를 기준으로 낙태의 금지 및 처벌 여부를 달리한다고 할 때, 임신 12주의 태아와 임신 13주의 태아 사이에 생명 보호 정도를 달리해야 할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다수의견에 따라 자기결정권에 근거해 낙태를 허용한다면 일반적인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허용은 결국 '편의'에 따른 생명 박탈권을 창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관계라는 원인을 선택한 이상 그 결과인 임신, 출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임신한 여성은 '임신상태'라는 표지를 제거하여 행복을 찾을 것이 아니라 태아를 살려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 우리 세대가 상대적 불편요소를 제거하는 시류에 편승하여 낙태를 합법화한다면 훗날 우리조차 다음 세대의 불편요소로 전략해 안락사, 고려장 등의 이름으로 제거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모자보건법은 5가지의 예외 사유를 두어 의사가 임신한 여성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임신 24주 이내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의사와 임신한 여성을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자기낙태죄 조항이 여성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6)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신 초기의 낙태나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2. 8. 23. 자기낙태죄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그 때부터 7년이 채 경과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위 선례의 판단을 바꿀 만큼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점에서도 자기낙태죄 조항에 대한 합헌 선언은 유지되어야 한다.

4. 남겨진 문제들

(1)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판결'을 함에 따라서, 해당 조항을 적절하게 개정해야 하는 과업이 국회로 넘어가게 되었음. 하지만 현재까지 낙태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낸 정당은

정의당이 유일하며(여성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전면 폐지를 주장함), 다른 정당에 이에 관한 뚜렷한 입장을 낸 바가 없음.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2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내에 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되었음.

(2) 언제까지를 '결정 가능 기간'으로 결정할지가 치열한 논쟁의 대상으로 될 것으로 보임. 헌법불합치 의견은 22주를 결정 가능 기간으로 보고 있고, 위헌의견은 14주를 결정 가능 기간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객관적, 의학적 기준이 무엇인지 불분명함. 소수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생명의 발달 단계를 인위적으로 구분하여 어떤 것은 허용하고 어떤 것은 금지한다면 기준이 모호하여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 국민 다수가 납득할 만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향후 입법의 과제로 남겨졌음.

(3)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낙태에 대한 예외가 사실상 더 폭넓게 허용되었다는 전제 아래, 낙태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문제, 수술보다 안전한 낙태 유도 약물 허용 문제, 피임 교육 강화 등 구체적인 차원에 있어서 검토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음.

(4)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세계적인 입법 추세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종교계가 생명 경시 풍조를 우려하는 등 다수 국민의 법감정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매우 어려워 하고 있음. 낙태죄가 위헌이 되었다고 해서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쪽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시키고,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함께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고 되어 있음. 위헌결정이 아닌 사안과 같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서는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과 같은 변형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이므로 법원이 이를 따라야 한다고 해석함. 반면에 대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일 뿐이므로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해석함.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 일종의 힘겨루기인데, 대법원이 낙태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지 지켜볼 필요도 있음.

II. 토론회 녹취록

1. 토론자 의견

[김현철] 현재가 이미 판결을 내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낙태의 기로에서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 이 상황에서 어떤 대안을 가질 것인가의 관점에서 말하겠다.

[홍순철] 이미 낙태죄가 헌법불합치된 상황에서 얘기하겠다. 특별한 사유에 의해 낙태 가능하다는 경우가 있다. 헌법불합치의 사유로 사회경제적 사유를 이유로 제시했다. 여기서 태아의 기형에 대한 말은 없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이유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졌다. 아기의 정상을 뭘 갖고 판단할 것이냐? 그 기준을 함부로 정할 수 없는 것이다. 임신 22주 이하의 경우 인간으로서 좀 낮은 판단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국가의 의료 수준에 따라 인간의 기준이 달라 질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맞지 않다.

이번 판결은 22주 이내의 태아를 맘껏 낙태하라는 것을 허용한 판결은 아니다. 20주 이전 유산, 20주가 넘으면 조산이라는 의학적 표현이 있다. 여성의 건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8, 9주 안에 낙태를 해야 산모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 그 이후는 사실상 건강상의 문제도 있다. 실질적으로 10주가 넘으면 기본적인 인간의 모습을 띤다. 유럽, 북미의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는 의료가 공무원과 같은 직군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립, 개개 병원의 책임이 있다.

저는 살아있는 태아를 낙태하라 그러면 할 수 없다. 모든 산부인과 의사에게 낙태를 의무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 캐나다의 경우도 낙태를 할 수 있는 병원이 따로 있다. 그것처럼 우리나라도 낙태를 하게 된다면 이미 공공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낙태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켜주자. 낙태 시술, 낙태 상담을 지금과는 좀 다르게 해서 낙태 시술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낙태를 시술하고 있는 의사들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진 않다. 공공기관에서만 낙태하게 돼도 의사들의 큰 반발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약물 낙태도 문제가 있다. 약물 자체가 살아남게 된 태아에게도 장애로 이어진다. 약물 사용에 대한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단은 22주 이내 중에서 여성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기간은 8, 9주다. 어느 정당이든 이런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낙태를 하는 기관을 정했으면 한다. 태아 기형은 낙태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다.

[달밤] 처벌이란 방식으로 여성을 양육, 여러 차별로 대했던 문제에서 이제 국가가 여성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논의로 나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어떤 기준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의해 임

신중단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처 없이 여성이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여성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관점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백소영] 모성에 대한 책을 써온 입장에서 이 사안에 대해 말하는 것이 많은 고민이 되었다. 징벌적 정의가 아닌 회복적 정의가 되어야 한다. 어떤 엄마가 낙태를 선택하는 것을 즐겁겠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여성의 입장이 논의되기보다 태아의 입장이 계속 되었던 것 같다.

미국에서는 프로-라이프 대 프로-초이스의 구도로 진행됐다. 여기서 프로-초이스가 낙태할 자유라는 용어로 이해된 것이 잘못 됐다. 여성이 마치 낙태하고 싶은 안달 난 것 같은 관점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프로-라이프와 프로-라이프의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엄마의 자기결정이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결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엄마를 감싸고 있는 사회적 포궁, 생명을 보존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회나 기독교공동체가 그런 일을 해줘야 하는 시점이다.

[문시영] 이번 불합치 결정에 대해 아쉬운 것은 사회적 공론화 절차에 따라 충분히 토론이 가능했음에도 법리적 판결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평소의 소신은 낙태에 대해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 것인가의 관점이 옳다고 본다.

두 번째, 하우(How)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기독교윤리학자로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논의가 기독교와 여성의 대립구도 가서는 안 된다. 이미 이 논제는 공공의 논제이다. 시민사회 안에서 이해가 되어야 한다. 기독교 안에도 올바른 관점을 가진 사람도 있다. 공공신학적 논의가 필요하다. 스탠리 하우어워스의 말처럼 교회는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복음의 다음세대를 환영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2. 토론자 상호 토론

[목광수] 그럼 이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해보자.

[김현철] 낙태를 원하는 여성 없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낙태 선택이 힘든 일이라는 것이다. 그 힘든 현장에 어떻게 여성이 있지 않게 할 것인가, 어떻게 줄일 것인가 모색해야 한다. 자꾸 법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사회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나 되고 있는가 봐야한다.

여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생명교육, 성교육, 피임교육을 제대로 해야 한다. 피임 만능주의가 아니

라 절제의 의미, 피임을 안 할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등을 교육을 해야 한다. 피임을 교육하는 것이 섹스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다. 남학생들의 생각이 바뀐다. 미혼모 지원책을 늘리면 미혼모가 늘어나는가? 아니다.

남성(미혼부)책임법이 있어야 한다. 2천명 넘는 미혼모를 만났다. 그때마다 남성으로서 사죄했다. 도망간 남자를 붙잡고 책임지는 것에 대해 가르쳤어야 한다. 남성에게 출산비 양육비 구상권 반환 등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혼부모 지원 늘려야한다. 그런데 사회의 조롱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 책임도 못 질거면서 왜 낳아서 내 세금을 쓰이게 하는지에 대한 시선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위기임신부를 위한 상담을 갖춰야 한다. 여성가족부가 주도하겠다고 하는데, 낙태병원 안내콜센터의 성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닌 예방 차원의 법으로서 울타리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 환경을 설치하면 낙태에 대한 고민이 줄어든다. 법에 의해 낙태가 조정되는 것이 아닌 촘촘한 사회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은 정부가 해야 하고, 교회가 해야 한다. 국가나 사회가 다 하지 못하는 것을 교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홍순철] 현재에서 사회경제적 사유를 예로 들었던 것 중 '이미 자녀가 있어 더 이상의 자녀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을 경우', '맞벌이여서 어느 일방이 휴직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미혼부모의 경우도 있지만, 사회경제적 이유를 드는 가정은 둘째 혹은 셋째를 임신했을 경우라는 것이다. 임신 유지에 대한 숙려를 어떻게 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지원과 상담을 줄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 상담 시설과 시술 시설이 분리되어야 한다.

[백소영] 개인이 자기 결정을 통해 아이를 낳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여기 계신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기 위해 어떤 전문가들이 모여 합의를,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전문가인가? 여성의 결정을 위한 숙려기간의 활성화와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이 어떤 방식으로 균형 있게 구성되는가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달밤] 성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반갑다.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 피임을 어떻게 실천했는가라는 질문에 월경주기법이 47%, 피임하지 않았다 40%였다. 왜 피임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임신이 쉽게 될 것 같지 않았다는' 대답이 많았다. 피임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느냐? 인터넷, 학교, 지인 순이었다. 청소년, 미혼 여성에게 왜 피임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하자 피임도구를 준비하지 못해서, 파트너가 원하지 않아서 라는 대답이었다.

성교육이 형편없었던 것이다. 피임을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하면 임신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과 미성년자들 사이에 만연하다. 매우 잘못된 내용들이 많지만, 표준 성교육 안이 나왔음에도 교육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경각심을 가져야한다.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처벌을 느슨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처벌을 전제 하는 논의이다. 처벌을 없애지 않는다면 국가는, 법은, 책임을 여전히 여성에게만 지우는 것이다. 실제로 낙태가 허용될수록 낙태율은 줄어들고, 위험임신도 줄어든다. 선진국도 그렇다. 인공임신중절이 자신의 몸에 치명적인 위험을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낙태를 하고자 하는 여성은 되도록 빨리, 8주 이내에 낙태를 한다. 여성의 낙태시술이 보장이 되어야 여성의 생명권이 보장된다. 이번 현재의 판결문은, 태아의 생명권도 지키지 못했다고 본다.

[문시영] 우리 사회에서 생명과 관련된 논의를 할 때 개신교다 가톨릭이 더 세다. 기독교 율타리 안에서 이야기가 되려면,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인가를 먼저 논의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다. 상속법에서는 태아를 태어난 것으로 보는데, 낙태에서 태아를 말하는 것과 충돌한다. 오늘 모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신학자들의 모임을 충분히 가져 사전 합의와 전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백소영] 전쟁은 위험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쟁을 해야 할 수밖에 없을 때, 'JUST WAR'(정당전쟁)라는 용어가 나왔듯이, 이 논의에 대해서도 'JUST ABORTION'(임신중절)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HOLY WAR와 JUST WAR를 비교하자면, 기독교적 'HOLINESS'를 오용할 위험이 있다.

[홍순철] 산모가 본인의 치료를 포기하고 아이를 살린 예를 들었을 때 충격적이었다.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구나 싶었다. 사회경제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여성이 낙태를 원하지만 시술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일 때, 정말 낙태를 원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75%의 여성이 낙태를 원한다고 답했지만 설문대상은 밝히고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보험 적용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

[김현철]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법과 낙태율을 연동시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낙태규제가 없어야 완벽한 여권(女權)이 주어지는 것 아니냐는 정의당의 주장이 있는데, 법은 처벌이 아닌 예방을 위해 있는 것이다.

[달밤] 제가 인용한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서 1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이다. 가짜뉴스가 아니다. 유럽의 경우 사회제반시설과 지원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법과 낙태율 뿐 아니라 사회보장과의 연계성으로 그런 수치가 나온 것이라고 말씀 드린 것이다. 미국의 경우, 그것은 규제가 풀렸기 때문에 신나서 낙태를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못하고 있었던 사람

들이 할 수 있게 된 수치라고 해석한다.

[백소영] 구세군에 '두리홈'이라는 제도가 있다. 미혼모에 대해서 만 2년 동안 다양한 지원과 교육을 제공하고 그 후에 입양을 보낼 것인지, 키울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굉장히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문시영] 목사님들의 어떻게 설교해야할까 많은 고민을 할 것 같다. 목사들이 배운 내용과 충돌하는 지점들이 있고, 어떤 설교하든 성도들과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좋은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겠다.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이 방임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과 오늘 나온 논의들이 교회와 목사들에게 잘 설명되면 좋겠다.

3. 청중 질문/의견

[청중1]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기독교를 대표하는가? '기독교'라는 글씨를 빼야할 것 같다. 지금 논의는 '윤리실천운동'이라고 느껴진다. 이정미 대표가 낙태죄 폐지 법안을 냈다. 14주 여성 자유결정 낙태가 아닌 인공임신중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것이다. 나는 '낙태라는 괴물'을 30년 동안 쫓아다녔다. 홍순철 의사선생님! 임신했을 때, 세포의 임신을 축하한다고 합니까? 아이의 임신을 축하한다고 합니까? (홍순철 : "임신을 축하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이를 임신해서 축하합니다'라고 하죠? 우리 선생님 절묘하게 피해 가시는데. 5천년 동안 태아는 생명이었다.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관들의 법값 못한 판결이다.

[청중2] 달밤님은 성교육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가?

백소영 교수님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아닌 여성의 생명권과 태아의 생명권으로 봐야한다고 했는데, 이야기의 흐름이 결정권에서 생명권으로 어떻게 넘어간 것인가?

정종욱 변호사님에게, 교회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는데, 만약 이 경우 교회에서 권징을 했을 때 교회가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가?

[청중3] 어떤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성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생각한다. 예를 들어주신 여러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공통적으로 드는 생각은, 여성에게 원하는 모습은 모성, 엄마라고 보는 것 같다.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낙인을 찍고 있다. 사회적 제도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전제도 다양한 여성의 상황과 선택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여러 영역의 고려가 있어야 논의도 의미 있을 것이다.

4. 토론자 답변

[정종욱]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기독교를 대표하는가? 기윤실은 마이너 단체라고 생각한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주류 교회와 교단들은 정작 이런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더 안타깝다.

교회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에 동의를 한다. 그럼 교회 안에 낙태 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봐야한다. 고소는 형사재판 용어이고, 교회의 징계나 출교 등을 한다면 민사재판으로 '교인 지위 확인 소송' 등을 할 수는 있을 것 같다.

[문시영] 기윤실의 대표성을 말하기보다, 이곳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해법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과 신학적 혼돈에 빠진 목사들의 인식에 대해서부터 이야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백소영] 오늘 논의를 해보니 해결법은 공통점이 있지만, 전제는 전혀 달랐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5천년동안 태아가 생명으로 여겨졌던 것과 달리, 5천년동안 여성은 생명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인간은 신체적, 물리적, 정서적 등 통전적인 의미에서의 '생명'을 가진다. 여성들이 낙태하고자 안달이 난 집단인 것처럼 여기는 것은 너무 슬픈 현실이다. 여성이 대상화, 도구가 아닌 비로소 한 생명으로서, 주체로서 인정받았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달밤] 성교육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관계, 피임 등에 대해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회의 남녀 간 권력의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피임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가, '파트너가 원하지 않아서' 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성교육은 시작이다. 사문화되었지만 인식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냥 두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제기에는 반대한다. 그 법 때문에 낙인찍히고, 그 법을 악용한 이들 때문에 피해 받고 있는 여성이 너무 많다.

[홍순철] 여성의 당사자 문제는 무척 중요한 이야기이다. 낙태 후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사람은 여성 당사자이다. 입양을 보낼 때 가장 많이 우는 사람은 여성 당사자이다. 사전과 사후 적절한 상담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왜 아이를 한명만 낳는가? 많은 부분 국가의 문제이다. 불필요한 낙태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다루어져야한다. 입양을 보내는 아픔보다 낙태를 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 근거한 선택이 있을 텐데, 이는 사회적으로 같이 논의해야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김현철]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말하겠다. 예수가 낙인찍지 않는데, 누가 누구를 낙인찍겠는

가. 낙태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낙태해서는 안 될 사람이 낙태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열심을 낼 것이고, 교회가 그 일을 해야 한다.

[목광수] 진영과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이 있었다는 것이 놀라웠다.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자 필요한 일이겠다. 오늘 토론회에 와주셔서 감사드린다. (끝)